

제 6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6.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일 직전에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6.2 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⁷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⁷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의 통합 목적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나호에 언급된 인과관계는 제6.6조에 정의된 “실질적 원인”을 말한다.

제4.2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한쪽 당사국은 제1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최대한으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어떠한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특정 상품에 대해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 상품에 대해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 이 절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어떠한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종료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적용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6.3 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적용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적용 당사국은 제6.2조제1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적용 당사국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제6.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모든 추가 관세를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6.2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6.4 조 보상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제 6.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그 조치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또는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6.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다른 어떠한 개별 원인보다도 더 기여하는 주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에 따른 관세 철폐일 또는 관세 감축 완료일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6.7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그 농산물의 어떠한 연도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6-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다. 부속서 6-가의 적용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를 적용한 연도 이후로는 그 조치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 4. 부속서 6-가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조치, 또는
 - 다.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 6.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조치를 적용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역량을 포함하는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의 조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 7.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물량은 차기 연도에서의 제1항 규정의 발동 목적상 차기 연도 동안 해당 상품의 수입 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다.
- 8. 이 조의 이행과 운영은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6.8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2.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가. 양 당사국은 반덤핑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자국의 현재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한다.⁸ 그리고
-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 부과’ 원칙을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제 6.9 조 통보 및 협의

1.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개시 절차 전에,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조사개시 직후에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상계 조치의 신청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사개시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이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의 기회가 제공된다.

제 6.10 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2. 반덤핑 조사에 있어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약속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 있어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약속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가 요청한 약속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⁸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1. 이 부속서는 제6.7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54,584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70,673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40	40	40	40	40	3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74,087	177,569	181,120	184,742	188,437	192,206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0	30	30	30	24	24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196,050	199,971	203,97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	24	24	0

나. 아래에 포함된 맥아(볶지 아니한 것) 및 맥주맥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3.00.1000 및 1107.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147,486	150,436	153,444	156,513	159,644	162,836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1003.00. 1000 (513%)	502	479	455	432	408	385
1107.10. 0000 (269%)	263	258	252	246	240	216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66,093	169,415	172,803	176,259	179,785	183,380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1003.00. 1000 (513%)	361	338	315	291	268	244
1107.10. 0000 (269%)	207	199	190	181	139	127

이행년도	13	14	15	16
발동수준(메트릭톤)	187,048	190,789	194,60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13%)	221	197	174	0
1107.10.0000 (269%)	115	103	91.5	0

다. 아래에 포함된 옥수수(기타)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005.9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3,053	33,714	34,388	35,076	35,777	36,493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13	298	283	268	253	190

이행년도	7	8
발동수준(메트릭톤)	37,22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67	0

라. 아래에 포함된 설탕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1701.99.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946	965	984	1,004	1,024	1,044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5	35	35	35	35	3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발동수준 (메트릭톤)	1,065	1,087	1,108	1,131	1,153	1,176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5	35	35	35	35	35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19
발동수준 (메트릭톤)	1,200	1,224	1,248	1,273	1,299	1,325	해당없음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5	35	35	35	35	35	0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위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